

9. 施設物の安全管理에 관한 特別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5,141號 1995.12.3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본문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10년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중전 제3호)중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39조 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39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의 이를 삭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리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제40조 및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요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과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손괴를 야기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제한조치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39조).
- 나.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9조의2).
- 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43조). 〈법제처 제공〉

가격경쟁 부실공사 기술경쟁 성실공사